



김동규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8중재부 중재위원

언론조정을 통해 본 세월호 보도

1. 문제제기

2014년, 한국사회의 공공성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세월호 사고 이후 언론보도가 쏟아졌고, 이에 대한 언론조정 신청 또한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세월호 사고 보도는 검증 없는 받아쓰기나, 무분별한 속보경쟁 등 한국 언론의 많은 문제점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었다. ‘안산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속보 자막을 시작으로 ‘정부 육해공 총동원 구조작업’, ‘세월호 내부 진입성공’ 등 잇따른 오보는 언론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으며 급기야는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기레기’라는 오명까지 낳았다.

그러다보니 대량 오보와 미확인·불확실한 보도, 경쟁보도, 자극적 보도, 무책임한 보도, 한풀이식 보도였다는 사회적 비판과 함께 ‘저널리즘의 침몰’이나 ‘새로운 옐로우 저널리즘의 도래’라는 극단적인 평가에 직면하였다.

주목할 점은 언론계 스스로도 이런 비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기자협회가 지난해 전국 기자 3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원 구조 오보’ 등의 언론 보도도 세월호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 56.8%, ‘조금 동의한다’ 33.7% 등 총 90.5%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¹⁾ 나아가 취재와

1) 김성후(2014. 8. 13.), “기자 90.5% “언론, 세월호 참사에서 자유롭지 못해””, 〈한국기자협회보〉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

보도 현장 방송기자들의 모임인 방송기자연합회도 자체 연구팀인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산하에 재난보도 연구 분과를 구성, 보도내용을 분석한 바 있다. 세월호 관련 방송뉴스를 분석한 결과, ① 정부 발표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부족한 받아쓰기식 보도, ② 피해자 가족들을 고려하지 않은 비윤리적·자극적·선정적 보도, ③ 검찰 수사 후 유병언과 구원파에 쏠린 본질 희석식 보도 등 여러 문제점을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²⁾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조정건수 또한 급증하였다. 특히 특정 종교집단의 정보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중심으로 한 조정신청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행정 차원에서 ‘업무 마비’로 표현될 만큼 업무의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세월호 관련 언론조정의 실태를 정리, 유형화하여 살펴보고 그 함의를 따져봄으로써 추후 심도 있는 언론 및 언론 조정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2. 세월호 보도 관련 조정 실태

(1) 조정청구현황

2014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된 조정건수는 총 19,048건으로 2013년 2,433건 대비 무려 16,615건이나 증가했다. 아래 <표 1>의 최근 5년간 조정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위원회 조정사건 청구건수는 2010년 2,205건을 시작으로 4년 연속 2,000건이 넘는 수치를 보여 왔다. 그에 비해 2014년에는 이러한 수치의 평균에 7~8배에 달하는 조정건수를 기록했다.

<표 1> 최근 5년간 조정청구현황

(2010. 1. 1.~ 2014. 12. 31.)

구 분 \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청구건수	2,205	2,124	2,401	2,433	19,048
전년대비 증감	632	-81	277	32	16,615

이러한 증가는 세월호 관련 조정청구에서 기인했다. 2014년 조정청구건수 총 19,048건 중 세월호 관련 청구건수는 16,554건에 달해 전체 청구건수 중 86.9%의 비중을 보인다. 이들 청구건수 중 기독교복음침례회(교단) 및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유족 측 청구건수가

2) 방송기자연합회(2014), <세월호 보도, 저널리즘의 침몰 - 재난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널리즘 연구시리즈3

200여 개 주요 매체 대상 16,117건(97.4%)으로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정사건(이하 ‘일반사건’이라 한다)은 2,494건으로 2014년 총 조정청구건수의 13.1%에 그쳤다. 요약하면 첫째, 2014년 언론 조정신청은 전년대비 기록적 증가를 나타냈고, 둘째, 조정청구의 대부분을 세월호 관련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 전 회장 유족 중심의 조정신청이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들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을 청구권별, 매체유형별 그리고 법익침해유형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청구권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정보도청구가 11,564건으로 전체의 69.9%이며 그 다음은 손해배상청구가 4,934건으로 29.8%를 차지하였다. 반론보도청구는 56건으로 0.3%였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유족 측의 대량청구 부분에서도 정정보도청구가 11,447건 및 손해배상청구가 4,670건 등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이들 신청인들(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유족)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오보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으나, 대부분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종결되었고 실제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분쟁이 종결된 사안은 없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표 2> 2014년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청구권별 현황

(2014. 1. 1. ~ 2014. 12. 31.)

청구명	연 도	2014
정 정		11,564 (69.9)
반 론		56 (0.3)
손 배		4,934 (29.8)
계		16,554(100.0)

* () 안의 숫자는 %

다음으로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매체유형별 청구현황은 <표 3>과 같이, 인터넷신문이 7,108건(42.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가 3,865건(23.3%), 방송 3,539건(21.4%), 일간신문 1,032건(6.2%), 뉴스통신 977건(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러 매체 중에서도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 3개 매체에 대한 청구가 전체의 87.7%를 차지하여 이들 매체가 세월호 보도 관련 언론조정의 주요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어뷰징’ 기사가 많았던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매체, 그리고 생방송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이 많았던 방송 매체의 조정청구가 많았다.

〈표 3〉 2014년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매체유형별 청구현황

(2014. 1. 1. ~ 2014. 12. 31.)

매체유형	연도	2014
신문	일간신문	1,032 (6.2)
	주간신문	19 (0.1)
방 송		3,539 (21.4)
잡 지		14 (0.1)
뉴스통신		977 (5.9)
인터넷신문		7,108 (42.9)
인터넷뉴스서비스		3,865 (23.3)
계		16,554 (100.0)

* () 안의 숫자는 %

또한 〈표 4〉 2014년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법익침해유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16,403건으로 전체의 99.1%를 차지했으며, 초상권 침해와 음성권 침해는 각각 150건, 1건씩 청구되어 1% 미만을 차지하였다. 한편, 명예훼손으로 인한 조정청구 전체 16,403건 중 16,117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유족 측의 청구였으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150건 중 149건이 해당 교단 신도들에 의한 것으로 청구 수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다.

〈표 4〉 2014년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법익침해유형별 청구현황

(2014. 1. 1. ~ 2014. 12. 31.)

법익침해유형	연도	2014
명예훼손		16,403 (99.1)
초상권 침해		150 (0.9)
음성권 침해		1 (0.0)
계		16,554 (100.0)

* () 안의 숫자는 %



(2) 조정사건 처리결과

그렇다면 막대한 규모의 조정 신청에 대한 심리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표 5〉 2014년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심리 전 취하가 14,566건(88.0%), 심리 중 취하가 766건(4.6%)으로 취하가 전체 처리결과 의 92.6%를 차지한다. 그 이외에 조정성립 339건(2.0%), 조정불성립결정

723건(4.4%), 직권조정결정 63건(0.4%), 기각 60건(0.4%), 각하 37건(0.2%)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청효율은 91.5%로 나타났다.

처리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경우, 최근 3년(2011-2013) 조정사건에 비해 심리 전 취하가 전체 처리결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2011년, 2012년, 2013년 3개년 동안 심리 전 취하가 전체 처리결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20%대였으나, 2014년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에서 심리 전 취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88.0%에 이른다. 조정심리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건수가 339건으로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처리결과 중 2.0%를 차지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대조적인 수치이다.

또 다른 특징은 개별적으로 신청된 여러 신청건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언론 사별로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매체에서는 조정심리 전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문> 등 신청인 측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분쟁을 마무리 한 경우도 있었다.

실질적 피해구제 비율을 의미하는 신청효율의 경우, 91.5%로 예년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3년 전체 조정사건에 대한 신청효율 77.6%에 비해 13.9%p 높은 수치이며, 이는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 전 회장 유족 측이 신청한 조정사건 16,117건 중 취하된 15,245건이 대부분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등으로 피해구제 되었기 때문이다.

〈표 5〉 2014년 세월호 관련 조정사건의 처리결과

(2014. 1. 1. ~ 2014. 12. 31.)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신청 효율
		동의	이의	계속				심리전	심리중	
16,554	339	50	13	－	723(10)	60	37	14,566 (13,934)	766 (731)	91.5%
%	2.0	0.3	0.1	－	4.4	0.4	0.2	88.0	4.6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text{※ 신청효율} = \frac{\text{신청유효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계속 · 기각 · 각하 · 계류)}} \times 100$$

* 신청접수 후 심리실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정보도, 기사삭제 등을 의미함

3. 조정 사례를 통해 본 세월호 보도

앞서 통계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월호 보도 관련 분쟁과 언론조정 신청의 핵심은 특정 종교단체가 조직적 차원에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데 모아진다. 특히 신청인들의 손해배상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조정 과정에서 언론의 사실 확인 미흡, 과장보도, 오보 등이 가져온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등이 단골 이슈였다.

이번 언론조정심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논란이 되었던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1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의 대량청구 사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 전 회장이 관여한 종교단체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 책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 보도에 대해 대량으로 언론조정을 신청했다. 신청건수로 보면, 유병언 전 회장 사망 이후 조정신청을 개시하여 그의 유족인 부인이 11,306건을, 기독교복음침례회가 4,811건을 각각 신청했으며 대상 매체는 약 200여 개이다.

유 전 회장의 부인인 권윤자 씨와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실소유주이며, 유 전 회장이 구원파를 설립했고, 금수원이 유 전 회장의 소유라는 보도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청해진 해운 소속 직원 상당수가 구원파라는 보도, 그리고 유 전 회장의 정치적 망명설 및 정권 유착설과 로비설 보도, 구원파가 오대양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 주로 조정을 신청했다.

유 전 회장 부인과 기독교복음침례회 측 조정청구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조정성립 250건, 조정불성립 610건에 비해 취하는 15,24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혹은 기사삭제를 하는 것으로 신청인과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기 때문이다.

신청인 측에서는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제시하며 언론사가 해당 보도문 내용을 1회 게재하고 신청인 측에서 요구하는 각 기사 목록 하단에 해당 보도문을 링크하는 것으로 조치하면 조정심리 기일 전에 취하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양상도 많이 나타났다. 한편 그 수가 압도적인 조정신청사건을 접한 언론사에서는 신청인 측이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에 관계 없이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되는 기사에 대해 건건이 조정신청을 하였고, 신청인 측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언론사에서는 신청인의 방대한 조정신청으로 인해 각 조정대상기사를 검토하고 조정심리를 대비하느라 본연의 취재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심각한 언론자유의 침해를 받았고 세월호 사고 관련 대부분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이 접수되

어 향후 관련 기사 작성 과정에서도 위축효과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자주 제시하였다. 이는 곧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와 알 권리 즉, 언론자유 간의 충돌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위원회 역사상 유례없는 대량 사건의 접수로 인해 각 중재부는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심리진행의 원칙을 세웠다. 우선 조정청구 건수가 위원회의 일반적인 심리진행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중재부가 모든 청구 사안에 개입하기 보다는 당사자 간 포괄적인 합의를 통한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매체별로 대표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심리 시 당사자의 기본입장을 청취한 후 핵심적인 쟁점사안에 대한 중재부의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 포괄적 합의를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각 중재부의 조사관들이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원활한 심리진행을 위해 쟁점사항별로 사건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중재부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조정심리 전·후 양 당사자 간 논의가 촉진되도록 당사자들을 독려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매체들이 조정을 통해 세월호 관련 보도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사례2

초상권 침해 사건

필자가 중재위원으로 몸담고 있는 서울 제8중재부는 2014년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로 운영되어 초상권, 음성권 등의 기타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주로 다루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의 초상권 침해 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모두 149건이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은 자신들에 관한 언론의 각종 의혹보도에 대해 자신들은 세월호와 무관함을 주장하고자 금수원, 인천지방검찰청, KBS 등에서 집회를 가졌다. 신도들은 이러한 집회 관련 보도과정에서 자신들의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도로 인해 자신들이 신도인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고 당시 기독교복음침례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 50여 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들은 기각되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인 점과 언론의 자유가 헌법 상 보장되는 권리임을 고려한 결과였다. 즉, 공익과 사익 간의 이익형량을 고려한 심리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보도와 관련해서도 초상권 침해 사건 등이 다양하게 접수되었다. 유명 탤런트 전00의 인천지방검찰청 소환조사 시 동행한 자의 초상권 침해 사건, 오00 전 체코대사와 동행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전 회장 장남 유대균 씨의 첫 공판을 방청한 자의 초상권 침해 사건,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개최한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 포럼'에서 방청객으로 참여한 자의 초상권 침해 사건, 유대균 씨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관 틈에 섞여 있던 자의 초상권 침해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중 일부 사

건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한편, 다른 일부 사안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여부 및 묵시적인 동의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불성립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였다.

조정절차는 엄격한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승패를 결정짓는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 간 양보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써, 해당 초상권 침해 조정청구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의 경우를 토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신청인들의 인식 변화를 향후 언론 현장에서는 취재·제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 및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3

기독교복음침례회와 무관한 종교단체에 관한 보도 사안

모 종합편성방송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보도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와 무관한 신청인 합창단의 공연포스터를 자료화면으로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모 종교단체와 연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독교복음침례회와는 무관하며, 보도로 인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로 인식되어 이미지가 손상되었고 향후 공연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는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했다.

해당 방송사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취재 없이 성급하게 신청인 합창단과 특정 종교단체를 연관시켰으며, 단 몇 초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조정심리를 개최한 결과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양보하는 대신 방송사가 사과 자막 및 공연 소개 방송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4

유병언 전 회장 도피설과 관련한 보도 사안

유병언 전 회장 도피설과 관련한 조정신청도 줄을 이었다. 한 종합편성채널 보도에서 유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조력자로 언급된 신청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강력히 원하였다. 하지만 방송사는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어 조정절차에서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조정불성립결정 이후 유병언 도피설과 관련 신청인이 해외 조력자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신청인의 실명과 초상을 공개한 3개 매체 및 소속 기자들에 대해 신청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서는 기사내용에 진실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 총 1,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하였고, 현재 해당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소위 '신 엄마'와 유 전 회장 장남인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거론된 박OO도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조정을 청구하여 2015년 현재 매체별 조정심리가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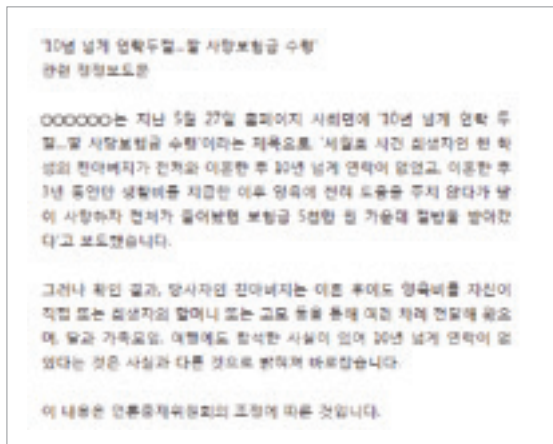
사례5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 및 기타 단체 관련 보도 사안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학생의 친부인 신청인이 오래 전 이혼한 뒤 자식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오다가 사고 이후 돈 때문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내용의 10개 매체 보도에 대해 조정신청이 접수되었다. 신청인(세월호 사고 희생 학생의 친아버지)이 전처와 이혼한 후 10년 넘게 연락이 없었고 이혼 후 3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한 이후 양육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다가 딸이 사망하자 전처가 들어놓았던 보험금 5천만 원 가운데 절반을 받아갔다는 게 보도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혼 후 2014년 2월까지도 양육비를 자신이 직접 또는 희생자의 할머니 또는 고모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전달하였고, 딸과 가족모임 및 여행에도 동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상징적인 금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주장하였다.

조정심리 결과 대부분의 매체는 정정보도 게재와 더불어 10~30만 원 정도의 소액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 딸 사망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이들 사례와는 별도로 세월호 사고 구조 관련 회사 및 구조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도 구조 상황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조정신청을 접수하기도 했으며, 구조 상황과 관련한 속보 경쟁으로 양산된 오보에 대해 민간 잠수부가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즉,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 ‘해경 구조대원들이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받았으며 그 조사에서 일부 대원들이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아 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 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정성립이 이루어져 해당 언론사는 당시에 합동수사본부 조사가 아예 없었다는 취지로 정정보도 하였다.

한편 민간 잠수부 신청인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인이 구조 현장에서 활동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구조 회사 소속이라는 보도’가 조정신청의 대상이었다. 신청인은 10여 개 언론매체에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신청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으로 구조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분쟁은 마무리되었다.



민간 잠수부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4. 평가 및 전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세월호 사고 보도는 전대미문의 대규모 언론조정 대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물론 해당 언론사들도 사상 초유의 경험을 해야 했다. 관련 여러 심리에 참여한 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조정의 주체인 신청인, 피신청인(언론사)은 물론 언론중재위원회 모두가 변화하는 언론 및 조정 환경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과제에 적응해야 함을 실감하였다. 그 과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언론사들로서는 재난관련 취재와 보도 관행의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이번의 경우 막대한 규모의 조정폭탄에 대한 1차 책임은 언론사들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선정성·추측성 보도 및 베껴쓰기 기사를 쏟아낸 일부 언론들의 행태는 저널리즘의 정도에서 한참 거리가 멀었다. 많은 언론사들이 직접 취재하지 않은 정보를 기사화하여 마구잡이식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추후 사실 증명이 어려워 많은 경우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같은 신청인 측의 요구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런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 종교집단의 과도한 조정신청이 조정제도의 취지를 남용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언론의 보도가 상당 부분 근거 없는 풍문과 추측이었음을 말해준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 확인과 함께 취재원의 동의를 받는 문제, 무관한 정보의 모자이크 처리 등은 인격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이 공익이나 알 권리라는 이름 아래 보도한 많은 내용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공익과 알 권리의 대상이었는지 언론계 내부의 치열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³⁾ 세월호 보도 관련 대량조정신청을 주도한 종교집단 대변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의 기사를 베껴 쓴 기자들은 바로 꼬리 내리고 기사를 삭제하거나 정정보도에 바로 합의한다.”며 “우리로서는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 편하긴 하지만 이런 언론의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언급했다.⁴⁾

그동안 실천적 대안으로 많이 제시되었던 것이 취재와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준수하게 하고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문제는 지금까지 준칙이 없어서 보도가 나뉘었던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고 다시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가이드라인 준수와 인권교육을 강제할 것인지, 강제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한다면 어떤 형식과 절차를 통할 것인지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둘째, 향후 집단적 차원의 공격적인 대규모 언론조정 신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종교집단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번 경우처럼 언론사의 규모, 영향력, 크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조정신청을 할 경우 취재와 보도 현장에 서 ‘위축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⁵⁾ 보도의 맥락을 배제하고 오로지 사실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칫 보도의 정당성까지 부정될 수 있다. 그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인격권 보호와 언론 자유 간의 긴장관계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경우는 한 종교단체가 수많은 언론사를 상대로 무더기 제소를 진행하면서 분쟁 조정 기구를 그 통로로 활용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조정신청을 할 때는 동일 매체에서 여러 개의 기사가 나갔더라도 이를 한 건으로 취합해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번의 경우 기사 개별 단위로 신청하는 바람에 한 언론사당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천 건의 신청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비용이 무료이고 별도의 수수료도 들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대량조정신청이 가능했던 맥락 중 하나로 보인다. 향후에도 특정 대형사건

3) 양재규(2014), “공익·인격권 관점에서 본 세월호 사건보도의 문제: 인격권 존중은 보도윤리 아닌 법적 의무”, <신문과 방송> 제525호, 103면.

4) 김유리(2014. 12. 16), “구원파 ‘언론중재위 폭탄 제소’ 왜? - “명예회복 기대 안 한다... ‘오보 폭탄’ 대응법 연구하고파””,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List.html>

5) 황용석(2014. 12. 15), “구원파와 언론중재 ‘폭탄’”,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

이나 이슈의 발생으로 인해 다수 신청이 접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인 피해구제에 기반을 둔 특정사건에 심리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조정신청 건의 처리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언론조정 및 중재제도의 선용은 더욱 권장해야 하지만, 차제에 남용과 오용의 경우를 구분해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언론계가 조정과 조정 신청인을 대하는 인식과 자세에 있어서도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언론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신청인이 더 이상 단순히 피동적인 언론보도 수용자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신청인들은 이전의 단순한 불만제기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초상권과 명예훼손 등 인격권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훨씬 높으며, 스스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증거수집과 제시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넷째, 심리 차원에서도 공익, 인격권 침해 및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여러 차례 관련 논의가 제기되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리적 차원의 논의는 아닐지라도 심리 차원에서 공익과 인격권 간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적절한 기준은 무엇인지, 온라인이나 보도 등에서 초상권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 의제의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한 단계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